

# 부산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기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992. 10. 14

의회 운영위원회

### 1. 심사 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2. 10. 2일 손원익 의원외 12인 의원 발의
  - 나. 회부 일자 : 1992. 10. 9일 회부
  - 다. 상정 일자 : 제16회 남구의회(임시회)
-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2. 10. 14일) 상정, 의결

###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손원익 위원)

#### 가.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1992.9.17 대통령령 제13727호)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 지급 범위가 평균 10% 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반영하고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 범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추어 부산직할시내로 범위를 확대하며,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의 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나. 주요 골자

- 제7조(여비지급 기준)에 제2항을 신설하여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의 여비는 별표 1의 현지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도록 함.
- 제8조(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①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지급시에 별표 1에 의한 식비를 포함하여 지급도록 하고,  
②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 범위를 “부산직할시 남구 관내”에서 “부산직할시내”로 개정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내용과 일치시킴.
-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 기준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맞추어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 지급 기준을 평균 5-10% 인상함.

### 3. 전문위원 검토 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무상)

- 부산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증기정조례안은 1992.9.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발의된 것임.
- 본 개정조례안의 제정 동기를 말씀드리면, 1992.2.29일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 여비 정액이 평균 10% 인상되었고, 이에 맞추어 1992.9.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여비 정액이 평균 10% 인상되었고, 또한 의회사무실내의 출장 범위도 남구에서 부산직할시내로 범위를 확대로록 한 것임.
-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제7조(여비지급 기준) 2항을 신설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시 지급하는 여비지급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 둘째, 제8조(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제1,2항에서 의회사무실내의 소재지인 부산직할시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 12km미만인 출장시에는 식비와 여비를 지급도록 하였고,
  - 세째, 별표 1(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서 인상된 여비를 반영, 조정하였으며, 별표 2(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서 제7조의 항목이 조정됨에 따라 관련 항목을 변경한 것임.
- 이상의 개정 항목은 상위법규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부산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의 제7조(여비지급 기준), 제8조(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여비), 별표 1(국내여비지급 기준표), 별표 2(국외여비지급기준표)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극히 타당하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